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8 선고 2017가단512261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8. 4. 24.

판결 선고2018. 5. 8.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4,600,216원 및 그중 152,448,986원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18. 3. 13.까지는 연 10%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7. 1.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7. 2. 1. 접수 제48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3호증(가치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5. 4. 2.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C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받는 대출에 대하여 보증기한 2016. 3. 31., 보증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보증기한은 2017. 3. 31.로 연장되었다.

2)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그 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대 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피고 A은 2017. 3. 2. 이후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7. 4. 1. 원금연체로 인하여 그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소외 은행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그에 따라 2017. 11. 17. 소외 은행에 152,448,986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2)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7. 11. 17.부터 연 10%이다.

3) 원고가 위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은 449,870원이고, 추가보증료는 1,701,360원이다.

다. 피고 A의 재산처분 행위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 16. 피고

B과 매매대금 130,000,000원1),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일, 잔금 100,000,000원은 2017.

1. 31.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1.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154,600,216원(=대위변제금 152,448,986원 + 추가보증료 1,701,360원 + 법적 절차비용 449,870원) 및 그중 152,448,986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7. 11.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인 2018. 3.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항목에서는 '피고'라고 한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1. 16.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원인으로 대위변제를 하게 된 근거가 된 이 사건 보증약정과 그에 따른 대출은 그 이전인 2015. 4. 2. 이루어졌고, 2017. 4. 1.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 피보전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갑 제7~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G호의 1/2지분(이하 '별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가액인 130,000,000원 상당, 별건 부동산은 거래가액인 141,000,000원(=282,000,000원×1/2) 상당인 사실, 피고 A의 소극재산은 기업은행에 대한 39,000,000원, 소외 은행에 대한 180,000,000원(원고 채권포함),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100,000,000원, 별건 부동산에 설정된 H 주식회사에 대한 240,000,000원의 근저당권 물상보증 채무, 주식회사 I에 대한 6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고 사해행위 결과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면 충분하고, 사해행위로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마땅히 제외되어야 하는 점에 의하면(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만 150,000,000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피고 A이 2017.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여 원고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감소 또는 소멸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며,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불교 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멀지 않은 익산시 J에 위치한 'K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당시 고령에다 건강이 나빠져 청주에 있던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전원생활을 할 목적으로 시골 땅을 알아보던 중 같은 신도인 L과 M로부터 피고 A을 소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그 매수자금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30,000,000원과 자신의 딸인 N이 O로부터 빌린 50,000,000원 및 딸이 가지고 있던 5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피고는 매매 당시 그 거래가 피고 A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들과 L, M[피고 A의 제수(弟嫂)이다]는 모두 K사의 신도들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K사로부터 승용차로 약 24분 정도의 거리(12.12km)에 위치하며 피고의 딸인 N이 2017. 1. 31. O로부터 50,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 그다음 날인 2017. 2. 1. N이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7. 1. 31. 은행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할 당시 고객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그 거래목적으로 '부동산 잔금'이라고 기재한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없이 피고들 사이에서만 체결된 것으로 피고가 2016. 2. 26.부터 2017. 6. 26.까지 섬망 증세로 이상행동 증상이 있어 향정신성 병 약물을 투여 중인 상태에서 그 매매대금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신도들이 소개하여 이루어졌다는 거래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거래 관념상 흔한 일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 주장으로는 계약금 30,000,000원은 당시 전원주택 구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에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제9호증)에서 석연치 않고, 피고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서 알 수 있는 금전 흐름의 액수를 보더라도 피고가 과연 30,000,000원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있으며, 잔금 100,0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잔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이었다면 굳이 2017. 1. 31.과 2017. 2. 1. 두 번으로 나누어 50,000,000원씩을 출금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나아가 피고의 딸이 위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O로부터 빌렸다면 그에 관한 차용증 내지 이자 지급 내역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에 관한 자료가 없을뿐더러 나머지 50,000,000원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N이 피고에게 각 송금한 잔금 합계 100,000,000원은 '매매대금 지급이라는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도인인 피고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상 이유로 매매한다면 가능하면 모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였다는 것인바, 공인중개사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상태에서 매수인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인 피고 A의

요구가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행위라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와 사실관계만으로 앞선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로써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사해행위 취소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상렬

별지

1) D 대 321㎡와 그 지상 단층주택은 71,500,000원, E 전 2069㎡'는 49,000,000원으로 각각 정하는 등 각 부동산별로 매매가격을 구분하였고, 그 합계액이 130,000,000원이다.